

□ 개정개요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|

□ 개정 내용

- 국세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기한을 일반법인보다 1개월 추가 부여(4→5개월)
 * 법인세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절차 등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게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(3→4개월)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12조)

|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지방세법 부칙 제12조(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